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공통) ①출산사실(유·사산) ②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로서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한 자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		
	지원 유형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출산일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취득 요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는 자
			②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 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有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無			
⑥유형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학급지도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 지원제외자 - ①~③유형의 근로자는 출산일 기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퇴사자X) - ①~③유형: 사업주의 배우자, 동거친족(4촌이내 혈족, 8촌이내 인척)은 불인정 - ④~⑤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 및 공동사업자 없는 1인 사업자만 지원 가능, 부동산임대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함.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피고용인(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 출산급여 지급 (유·사산급여는 유·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출산일 이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150만원 일괄 지급)			

제출 서류	공통 제출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아래 참고)
	유형별 제출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소득발생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 ①유형: 공통 1,2번 서류만 제출 ②~③유형: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입금내역(통장사본) 등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계약서류, 도급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중복 제출

신청	온라인	▶ 신청자 본인: 고용보험(ei.go.kr) 개인공인인증서로그인 →모성보호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 ②~③유형 사업주: 고용보험(ei.go.kr) 기업공인인증서로그인 →모성보호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등록 ※ ①,④,⑤,⑥유형 신청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제출하지 않음.
	서식 다운	▶ 고용보험(상동) →자료실(검색: 미적용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신청서 및 고용보험 미가입확인서
	오피라인	▶ (우편)구미시 백산로118, 4층 기업지원팀 ▶방문 : 구미고용복지+센터4층기업지원팀
	문의	(전화)054-440-3360, (팩스)0505-130-303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반드시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_____ 접수일 _____ 처리기간: 14일

1. 신청인 정보(출산여성 본인)

①성명: _____ ②주민등록번호: _____
 ③주소 및 연락처 _____ (전화번호 : _____)
 ④출산(유산·사산)일: 20____. ____ . ____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_____

2. 사업주와 동거·친족 여부(출산일 현재 근로자인 경우)

⑥동거여부: []동거 []비동거 ⑦친족여부: 사업주의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해당없음

3. 사업장 정보(출산일 현재 1인사업자인 경우)

⑧-1 사업장명: _____ ⑧-2 사업장주소: _____
 ⑧-3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 _____ ⑧-4 사업자등록번호 _____ ⑧-5 법인등록번호 _____
 ⑧-6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입 []미가입

4. 신청내용

⑨급여의 구분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임신기간 : []15주 이내 []16~21주 []22~27주 []28주 이상)
 ⑩급여 지급받을 계좌(출산여성 본인의 실명계좌)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5.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소득활동 여부

<근로자>

- ⑪-1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자
- ⑪-2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⑪-3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 ⑪-4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 ⑪-5 [] 전전년도~출산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⑪-6 [] 사업자등록증 없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 ⑫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급여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 ⑪-1, ⑪-2, ⑪-3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 ⑪-2, ⑪-3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별도서식) · ⑪-4, ⑪-5에 해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⑪-4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⑪-5 또는 ⑪-6에 해당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고용보험가입이력, 국세청 신고정보(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출산일(유산·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 내용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 ③란은 출산여성 본인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2. ⑤란은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1명만 기재하고, 출산급여 신청일 현재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3. ⑥란은 사업주와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⑦란은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 여부를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4. ⑧-1부터 ⑧-6란은 출산여성 본인이 1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⑩-1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6. ⑩-2란은 소속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경우입니다.
 - * 농·림·어업 중 비법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 **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7. ⑩-3란은 소속사업장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아 출산여성 또한 피보험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8. ⑩-4, ⑩-5란은 피고용인이 없는 1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출산일이 속한 해 또는 직전년도 또는 그 전연도의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⑩-4란에 체크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또는 법인세 신고)
 - 세금신고사실이 없다면 ⑩-5란에 체크하고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9. ⑩-6란은 근로자 및 1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며, 소득활동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 18개월 기간 중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의 소득활동을 하였더라도,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1개월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활동 증빙자료 예시>

- 임금근로자로서의 소득활동 증빙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소득활동 증빙 :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로서의 소득활동 증빙 : 카드매출자료, 매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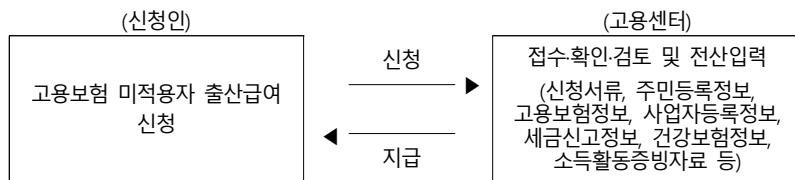
※ 증빙자료 상의 '날짜' 또는 '기간'의 적용 방법

-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매출 증거서류, 납품서, 보수명세서 등)
-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을 각각 1개월로 간주(계약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부동산임대업 관련 소득활동은 불인정합니다.

10. ⑫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선정 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출산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구직급여 수급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귀하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②-1 대표자 성명	
	③사업장주소	주 소: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④출산근로자 성명		⑤출산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출산근로자 입사일/퇴사일	
⑦출산일 (유산·사산일)		⑦-1 임신기간 (유산·사산)	[] 15주 이내 [] 22주~27주	[] 16~21주 [] 28주 이상	

소속 근로자(출산여성)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유(출산일 현재 기준)

⑧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⑨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 해당(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소정근로시간 : 월 시간)

⑩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미가입 근로자

- [] 사업장의 고용보험 미성립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
- *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가입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출산여성)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출산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 지급받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출산여성)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_____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귀하

작성방법

◎ 동 확인서는 출산여성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그 사유를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용도로 작성합니다.

사업주는 확인서 작성·확인 등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①란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출산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현재 근무중이면 '근무중')을 적습니다.
3. ⑦-1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표시합니다.
4. ⑧은 사업장이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제외 사업인 경우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5. ⑨란은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을 얻지 않은 경우 표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 출산일(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6. ⑩란은, 사업장이 고용보험가입 의무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아 출산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표시합니다.
 - *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료 소급 납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 이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